

제 507 호

1975.6.26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훈

편 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제 958 호 : 서울특별시 여비조례 개정조례.....	3
◎ 규	제 1481 호 : 서울특별시 설계심사위원회 운영규칙중 개정규칙.....	8
◎ 고	제 88 호 : 도시계획공원일부 지적변경승인.....	8
◎ 공	제 144 호 :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환지역정지 지정일부 변경공고.....	10
	제 145 호 : 환지역정지 변경지정 공고.....	11
	제 187 호 : (도봉구공고) 동청사이전공고.....	11
◎ 사	령.....	12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942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 여비조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5년 6월 26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958 호

서울특별시여비조례개정

서울특별시 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
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의 10종으로
한다.

제 3 조 (여비정액)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 여비
정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 4 조 (월액여비) ① 산림보호, 추방
토목, 건축, 기타 기술지도등으로
현장을 순회하는 공무원 또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액 여비를 일괄지급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실제근무일수와 동일한 때에는
월액여비를 전액지급하고 출장일
수가 실제 근무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월액여비를 실제 근무일
수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제 3 조 및 제 5 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장일수를 사
각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 지급한도액은 예산
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
한다.

제 5 조 (현장지도 여비) ① 지방
계시법 시행령 제 58 조의 2 의 규
정에 의한 사업장 및 세마을노
입소속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현장지도여비는 1일 1,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인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별표 3 이전비정액표에 의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부임할때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는 정액의 전부
2. 부임할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의 상당액

제 7 조 (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

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 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원로 출장할때야는 별표 1의 지급구분 중 당해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여 비 지 급 구 분 표

구		분	해 당 공 무 원
계	1	호	1 급 공무원
계	2	호	갑 류 2 급 갑 류 공무원 을 류 2 급 을 류 공무원
		갑 류	
계	3	호	갑 류 3 급 갑 류 공무원, 3 급 갑 류 상당 별 정 직 공무원 을 류 3 급 을 류 공무원, 3 급 을 류 상당 별 정 직 공무원
		갑 류	
계	4	호	갑 류 4 급 갑 류 공무원, 4 급 갑 류 상당 별 정 직 공무원 기능 직 1 등 급 내 지 6 등 급 공무원 을 류 4 급 을 류 공무원, 4 급 을 류 상당 별 정 직 공무원 기능 직 7 등 급 공무원
		갑 류	
계	5	호	5 급 공무원, 5 급 상당 별 정 직 공무원, 기능 직 8 등 급 또는 9 등 급 공무원
계	6	호	기능 직 10 등 급 내 지 15 등 급 공무원, 고용원

<별표 2>

각 비 정 액 표

등 급	철도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1일당)			숙박료(1야당)			식비(1일당)			식탁료
					복지	갑지	을지	복지	갑지	을지	복지	갑지	을지	1야당
계 1호	관광호보통실 (1종)	1등급액	경액	경액	1,000원	1,000원	1,000원	6,500원	4,500원	3,500원	3,000원	2,500원	2,000원	1,000원
계 2호	갑류 관광호보통실 (2종)	2등급액	"	"	1,000	1,000	1,000	6,500	4,500	3,500	3,000	2,500	2,000	300
	을류 관광호보통실 (2종)	"	"	"	1,000	1,000	1,000	6,500	4,500	3,500	3,000	2,500	2,000	300
계 3호	갑류 투급보통실 (3종)	"	"	"	800	800	800	3,700	2,400	1,500	2,100	1,800	1,500	300
	을류 투급보통실 (4종)	"	"	"	800	800	800	3,700	2,400	1,500	2,100	1,800	1,500	300
계 4호	갑류 투급보통실 (4종)	"	"	"	700	700	700	2,500	1,300	1,000	1,700	1,400	1,200	300
	을류 보통급행및완행	"	"	"	700	700	700	2,500	1,300	1,000	1,700	1,400	1,200	300
계 5호	보통급행및완행	3등급액	"	"	700	700	700	2,500	1,300	1,000	1,700	1,400	1,200	300
계 6호	보통급행및완행	"	"	"	700	700	700	2,500	1,300	1,000	1,700	1,400	1,200	300

비고 : 1. 복지는 서울특별시, 부산시로 갑지는 도청소재지와 인천시, 성남시, 북포시, 경주시, 카산시, 울산시로 을지는 기타시, 군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운임및 항공운임 경액은 교통부장관 인허 요금으로 한다.
 3. 계 4호 갑류 해당자 이상자로서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13-6 제 507 호 1975. 6. 26

<별표 3>

어 전 비 정 액 표

등 급	구 분	50 km	100 km 까지	150 km 까지	200 km 까지
	제 1 호 해 당 자		2,650	3,200	3,740
제 2 호 해 당 자		1,990	2,490	2,810	3,220
제 3 호 갑류해당자		1,660	2,400	2,910	3,220
제 3 호 을류해당자		1,660	2,000	2,340	2,680
제 4 호 갑류해당자		1,660	2,000	2,340	2,680
제 4 호 을류해당자		1,140	1,370	1,160	1,840
제 5 호 해 당 자		1,140	1,370	1,160	1,840
제 6 호 해 당 자		1,140	1,370	1,160	1,840

규 칙

서울특별시 설계심사위원회 운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481 호

서울특별시 설계심사위원회 운영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설계심사위원회 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조 (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은 기획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건설국장, 수도국장, 지하철본부장, 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 1과장, 도로보수과장, 하수과장, 치수과장, 기전과장, 시설과장, 개량 2과장, 지하철본부건설과장, 주택건설사업소 공사 1과장, 공사 2과장, 도시시설과장 및 시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제적인

시공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 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2조 (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중 시산하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회의참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88 호

도시계획공원일부지적변경승인

1. 건설부고시제 178호(71.4.2) 및 제 181호(71.4.3)로 일부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공원(2개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호(73.4

4)에 의하여 지적변경승인 교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6. 16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공원일부변경및 지적승인

지적승인조서 : 별첨조서와 같음

지적승인도면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출장소 시민봉사실에서 보관

도시계획공원일부변경지적승인

단위 : 평

공원명	위 치	기정면적	변경면적	변경후면적	비 고
상도공원	상도동	1,298,071	72,600	1,265,411	일부는 성곽보존 상 보류
낙산	동승. 돈암. 이화	390,530	84,300	306,330	
전농	전농. 답십리	215,624	7,800	207,924	
용봉	행당. 한남. 금호	936,325	161,100	775,225	
한남	한남. 보광. 이태원	575,140	125,800	449,340	
남산	예장. 회현. 도동	1,004,419	2,116	1,002,303	
효창	효창. 청과	229,405	31,901	198,004	
와우	창전. 상수	106,119	2,100	103,019	
한강	본동. 후석. 동작	376,598	69,850	306,748	
신길	신길	135,810	53,200	82,610	
인왕산	부암. 청운. 옥인. 사직	1,527,772	52,700	1,475,072	
안산	영천. 흥계. 북아현	952,800	81,116	871,684	
불광	불광	3,461,733	54,739	3,406,994	
산천	마포동. 산천동	63,160	24,200	38,960	

공원 명	위 치	기정면적	변경면적	변경후면적	비 고
신계공원	신계동	28,097	6,280	21,770	
대현제2아동	신수·노고산·대흥	63,373	5,000	58,373	
금화공원	북아현·충정·냉천	151,530	5,000	146,530	
본동공원	본동·혹서	116,055	13,500	102,555	
노량진도로	노량진·본동	281,040	149,000	132,040	
대방도로	대방·신길	86,174	38,100	48,074	
신길도로	대방·신길	37,190	21,900	15,290	
논암재*공원	논암동	20,991	20,991	0	
신설제1아동	보문동 6가	6,291	6,291	0	
후암제4*	후암동	4,500	4,500	0	
상도제4*	상도동	14,583	14,583	0	
봉천아동공원	봉천동	9,090	8,100	990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44 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
예정지 지정 일부 변경 공고

1. 서울특별시 신림, 신림수가, 시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
에 대한 환지예정지계획을 변경코저

서울특별시공고제 116 호 (75.5.22)
로 공담공고한바 있는 일부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용 별첨조서
및 도면과 같이 변경하였기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 47조 및 동법제 5
조와 해당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조례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런 공고한다.

2. 환지예정지가 변경지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은 공고일로부터 토지소유
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부여

한다. 다만 정지공사미완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환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토지는 정지공사 미완료 및 다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사용수익을 하게 한다.

3. 환지에정지 변경지정서 및 변경도면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1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첨부: 환지에정지 변경지정서 및 변경도면-조식별첩, 도면생략 (도면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1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 끝.

1975. 6.2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145 호

환지에 정지변경지정공고

1. 화양추가, 망우추가, 경인, 창동 역촌추가지구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조 및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에정지물 지정합니다.

2. 환지에정지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1과와 또는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서류는 별도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될 것이나 송달받지 못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첨부: 조서

도면생략. 끝.

1975.6.26

서울특별시장

◎도봉공고제 187 호

동청사이전공고

관하 미아제 8동 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기 공고함.

1975. 6.26

도봉구청장

다 음

- 1. 전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 704
- 2. 이전장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 703-48
- 3. 이전일자: 1975. 6.22

사 령

◎ 1975. 6. 20

용산구보건소장 지방의무기정시보 취한상
지방의무기정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용산구보건소소장에 포함.

◎ 1975. 6. 24

장 계 장 지방행정주사보시보 광진호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장계장근무를 명함.

◎ 1975. 6.25

마 포 구 지방행정서기보 김진우
부산시 전출을 명함.

◎ 1975. 6.26

의 안 과 지방의무 김상대
(의무제장) 기 과

동대문구보 지방보건 양창모
진소(방역과장) 기 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김수희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조미자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근무를 명함.

박효근

지방약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동포병원 근무를 명함.

김영숙

지방약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중부병원근무를 명함.

대구시 지방토목사 이원길

서울특별시 간입을 명함.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구회정리 1과근무를 명함.

◎ 1975. 6.28

경상북도 지방행정사 김복규
울릉군 주

서울특별시 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재무국 세무조사과근무를 명함.

◎ 1975. 7. 1

경기도부천시 지방행정사 정재완
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산업국 상정 파소비각보호제강에보함.

구회정리 1과 지방파취기사 소회열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구회정리 1과근무를 겸함.

가속위생 지방수의 박홍락
시 협소 사보시보

지방수의사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가속위생시험소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